

- ① 무죄추정은 피고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 ②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 ③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이 2 항목이 옳지 않다.

㉠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번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2)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대법원 1995.8.16. 95도20)

㉡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母)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6.10. 96도2814)

㉢ 대법원 1963.11.28. 63로10

㉣ 대법원 1976.11.10. 76모69

㉤ 대법원 1995. 1.12. 94도2687

6. 불심검문상 동행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07년 3월 일반경찰)

- ①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인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③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경찰관이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응답거부는 동행요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③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고

7.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③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면 이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10. 85도1273)

①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②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③ 대법원 1981.11.10. 81도1171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 ①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죄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그 고소는 효력이 있다.
-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④ 간통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때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대법원 1997. 5.23. 95도477

① 고소는 무효가 된다.(제229조)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5.11.25. 74도2577)

④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7. 5.23. 95도477)

11. 다음 중 현행법 또는 준현행법이 아닌 자는?(07년 3월 일반경찰)

①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제211조 참고)

12. 체포와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구속되었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 ① 4월 19일 24:00까지 ② 4월 21일 24:00까지

③ 4월 22일 24:00까지

④ 4월 23일 24:00까지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 된다.(제203조) 따라서 설문의 경우 (만약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없었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최장 4월 19일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 제12항) 설문의 경우 수사관계서류 등이 접수된 때인 4월 16일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인 4월 19일까지의 기간(일수로 4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구속기간은 원래 구속기간의 만료일인 4월 19일에서 4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결국 검사는 피의자를 4월 23일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7년 3월 일반경찰)

- ㉠ 압수된 금괴가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 ㉢ 세관이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 ㉣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모든 항목이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1. 4.22. 91모10

㉡ 대법원 1984.12.21. 84모61

㉢ 대법원 1988.12.14. 88모55

㉣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7.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어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는 뒤에도 환부를 할 수 없다.
- ②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가환부함은 모르되 환부는 할 수 없다.
- ④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없고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는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② 대법원 1994. 8.18. 94모42

③ 대법원 1966. 9.12. 66모58

④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8. 다음 항목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산은 몇 년인가?(07년 3월 일반경찰)

② ㉠은 7년, ㉡은 1년, ㉢은 10년이므로 이들은 합산은 18년이다.(제249조 참고)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다.
-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 포괄외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중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외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중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외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 [illegible]

20.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 ①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②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③ 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은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재주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할 수 있다.

④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을 할 수 있다.(규칙 제79조) 즉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까지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 ① 규칙 제73조
② 제162조 제3항
③ 규칙 제82조 제1항

21.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계가 없는 먼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 ①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제외사유
- ③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자의 재구속 사유
- ④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재구속 사유에 피해자 보호 규정은 없다.
- ①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된다.(제95조 제6호)
- ② 위 ①의 사유가 있는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사유에서 제외된다.(제214조의2 제4항 제2호)
- ④ 위 ①의 사유가 있으면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2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07년 3월 일반경찰)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가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同人)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비록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그 진술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27. 94도1905)

①② 대법원 2001. 3.27. 2000도4383

③ 대법원 1979. 5. 8. 79도493

23.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3월 일반경찰)

-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 군법회의 판결사본
- ㉢ 외국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들
- ㉣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 세무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 ㉧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인 메사돈(Methadone)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

- ① ㉠㉡㉢㉤
- ② ㉤㉥㉦
- ③ ㉠㉢㉤㉧
- ④ ㉢㉤㉥

- ④ ㉢㉤㉥ 이 3 항목의 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 ㉠ 대법원 2005. 1.14. 2004도6646
 - ㉡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 ㉢ 대법원 1979. 9.25. 79도1852
 - ㉣ 제315조 제1호
 - ㉤ 대법원 1976. 4.13. 76도500
 - ㉥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 ㉦ 대법원 1985. 4. 9. 85도225
 - ㉧ 대법원 1967. 6.13. 67도544

24.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를 대상이 아니다.
- ②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와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다.

- ② 대법원 2005. 2.18. 2004도7413
-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동의를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3.11. 2003도171)
- ③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순습)
-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는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5. 증거동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07년 9월 일반경찰)

- 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증거동위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위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증거동위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④ 증거동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전에 하여야 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① 대법원 1972. 6.13. 72도922 ③④ 통설이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①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②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
- ④ 문서의 사본

-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80도1547)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동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탄핵증거는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 ④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다.(대법원 1996. 1.26. 95도1333)
- ②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 ③ 제318조의2
- ④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 ①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② 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① 대법원 1996. 2.13. 95도1794
- ②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 3. 9. 85도951)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① 피고인이 1982. 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21.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

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습특수절도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후에 당해 물건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②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③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강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의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9.24. 74도2318)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순합)

30.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③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대법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된다.

④ (1) 대법원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판결정정신청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2. 67초22) (2)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94도2270)

① 대법원 1996. 4.12. 96도158

② 대법원 2003. 8.22. 2002도5341

③ 대법원 1984. 7.24. 84도1129

31.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07년 3월 일반경찰)

- ① 징역형의 실행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못한다.
-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

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그 상고취하는 유효하다.
- ④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받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면 이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9.13. 83도1774)

① 대법원 2000. 6.15. 2000모85

② 대법원 1992. 1.21. 91도1402 전원합의체

④ 대법원 1995. 8.17. 95모49

3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07년 9월 일반경찰)

-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볍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 8. 99도3225)

① 대법원 1971. 5.24. 71도574

② 대법원 1966.12.20. 66도1433

④ 대법원 2003. 2.11. 2002도5679

33.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07년 9월 일반경찰)

-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로 구분된다. ㉣ 항목은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 모든 항목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24. 83모5)
- ㉢ 재항고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29. 91재도2)
- ㉣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6. 8. 83모28)
- ㉤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13. 2003모464)
-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7. 7.22. 96도2153)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②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판사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확정전에도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② 즉결심판 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1999. 1.15. 98도2550)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면서 항소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③ 대법원 1969. 6.24. 69도651